

1. 피해사례 분석결과

(접근방법) 보험설계사와 대리점주가 평소 친밀한 관계에 있는 기존 고객이나 지인 등에게 접근하여 허위 자격 또는 직위*가 표기된 명함 등을 이용하면서 고수익 투자전문가로 행세

* 자산관리사, AFPK(재무관리사), 보험회사 영업이사 및 VIP 고객담당자 등

(고수익 소액 간접투자 권유) 투자전문가인 본인이 직접 투자하는 고수익 펀드나 저축보험 등에 매월 10% 이상의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는 조건 등으로 간접투자를 권유하거나 자신이 받을 모집수수료까지 지급을 약속하면서 고액의 보험가입을 권유

(수익금 지급방법) 실제 투자행위를 하지 않으면서 초기엔 투자자에게 약속한 수익을 보장하는 것으로 보이기 위해 타인으로 부터 모집한 투자금으로 돌려막기 방식으로 약속한 금액을 지급하며, 불안해하는 투자자에게는 개인영수증 등을 발급하여 안심시킴

(사기행위 발견시 행동) 일부 투자자가 사기행위라고 항의할 경우 지불각서 등을 써주면서 거액의 투자금을 횡령한 후 도피

II. 주요 피해사례

고수익 저축보험 투자권유 후 횡령

□ 보험설계사가 기존의 고객 등을 대상으로 고수익 저축보험에 가입하여 매월 일정금액 이상의 투자수익을 지급하겠다고 자금모집 후 횡령(‘13.12)

민원사례

○ 손보 소속 보험설계사가 기존 고객 및 지인에게 접근하여 고수익 저축보험에 투자하여 월 10%의 투자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자금모집 후 횡령(약 10억원)

○ 처음엔 매월 약속한 수익금을 지급하고, 수시로 카톡을 이용하여 투자자를 안심시킨 후 더 많은 금액을 투자토록 유도

□ (조사결과) 보험설계사가 저축보험에 가입한 사실이 없으며, 타인이 투자한 금액으로 투자금의 10%에 해당되는 금액을 매월 지급해 주면서 약 10억원의 자금 모집 후 도피

○ 일부 투자자(4명)의 경우 동 보험설계사로 부터 투자금을 반환하겠다는 지불각서를 받았으나 이행하지 않아 법원에 지급명

령 신청

- (시사점) 보험계약자 등에게 **고수익 투자**를 권유하거나, 사적금전 거래를 요구하는 등의 **모집질서 문란행위**를 하지 못 하도록 지도. 점검 강화 필요

고수익 펀드 투자 권유 후 횡령(투자전문가 행세)

- 보험설계사가 계약자 등에게 접근하여 투자전문가 행세를 하면서 고수익 펀드에 투자를 권유하고 자금모집 후 횡령(13.5, '14.1)

민원사례

- 손보 소속 보험설계사가 자신이 관리하는 고객에게 접근하여 전문 자산관리사라는 명함을 제시하고 고수익 펀드에 투자를 권유하면서 투자자에게 납부영수증을 발급(37명, 11억원)
- 생명 소속 보험설계사가 지인에게 접근하여 1억원 이상을 투자하면 고수익 펀드로 운용하여 발생한 투자수익금(10%)으로 연금보험료 납입 또는 현금으로 지급하겠다고 약속(3명, 약 4억4천만원)

- (조사결과) 보험설계사가 권유한 **펀드**의 실체가 존재하지 않고, '자산관리사'라고 사칭한 **명함도** 임의로 제작하여 사용한 것이며 영수증은 **개인도장**으로 날인함

- 계약자 중 한명이 지점에 부당행위를 신고해도 감사실로 즉시 **통보**

되지 않아 피해가 확대

- 피해자는 수익금으로 납입한 연금보험을 취소하고 기 납입보험료 환부를 요구하였으나 청약서에 피해자의 자필서명이 날인되어 있고 계약 후 3개월이 경과되어 취소 불가

- (시사점) 허위 전문자격증 등이 표기된 개인명함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지도하고, 영수증 관리 및 부당행위 신고가 적기에 실행될 수 있도록 내부통제 강화 필요

선지급수당 및 판매장려금 등 배분 약속

- 보험대리점주가 거액 자산가에게 접근하여 고액보험 계약시 모집수당 및 판매장려금을 전액 지급하겠다고 보험계약 유도('13.12)

민원사례

0생명 소속 보험대리점주가 거액 자산가에게 접근하여 1년간 월 97백만원의 연금보험을 가입할 경우 5억8천만원의 선지급 수당과 4천만원의 판매장려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약 4천만원)

사 초기엔 약속한 선지급수당 5억8천만원을 지급하여 1년간 약속한 보험료(월 97백만원)를 입금토록 유도

- (조사결과) 보험대리점주가 지인에게 고객의 보험을 체결할 경우

선지급수당과 판매장려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한 후 수수료지급기준이 변경되자 판매장려금 4천만원 미지급

- 피해자는 보험회사를 믿고 보험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하며 4천만원의 피해보상 요구

□ (시사점) 금품 및 부당 수수료지급은 보험업법 위반사항*임을 보험설계사 등에 재교육 필요

* 보험업법 제202조(벌칙) 3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부동산 등 경매투자를 통한 고수익 배분 약속

□ 보험설계사가 경매 전문가인 지인에게 고리의 급전을 빌려주어 발생하는 이자수익을 지급하겠다고 자금모집 후 횡령(13.12)

민원사례

0화재 소속 보험설계사가 자신이 관리하는 고객에게 접근하여 급전이 필요한 경매업자에게 투자하여 발생하는 이자수익을 지급하겠다고 약속 (약 10억원)

□ (조사결과) 보험설계사가 경매업자에게 급전을 대여한 사실이 없으며, 타인이 투자한 금액으로 약 6개월간 돌려막기식으로 월 10%를 지

급해 주면서 10억원을 모집한 후 도피

- 일부 피해자(11명)의 경우 동 보험설계사를 사기혐의로 **고발**(보험설계사는 도피 중 경찰에 입건됨)

□ (시사점) 보험설계사가 보험상품과 무관한 고금리.고수익 등을 미끼로 투자권유를 하는지 여부 등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